[서식 제45호](주관연구개발기관용)

연구개발계획서

[V] 신청용
[] 협약용

보안등급[1]: 일반[V] 보안[]

중앙행정기관명[2]	산업통상부	사업명	세부사업명[4]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전문기관명[3]	한국산업단지공단		내역사업명[5]	R&BD네트워크구축·운영[] 산단내공급수요기업연계국제규범공동대응기술개발[]	
공고번호[6]	제20xx-xx호	연구개발 과제번호[7]			
선정방식[8]	정책지정[] 지정공모[] 품목공모[] 분야공모[] 자유공모[]				
지원대상 분야[9]	단년도	유망기업맞춤형 R&D[] 디지털전환형 R&D[] 혁신기업성장형 R&D[]			
	다년도 중형	공동비즈니스형 R&BD[]			
	다년도 대형	대개조산단협업형 R&BD[] 밸류체인고도화 R&BD[]			
	국제규범 공동대응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			

기술분류								
	산업기술분류[10] (6자리 코드)	1순위 소분류 명칭 ()	00%	2순위 소분류 명칭 ()	00%	3순위 소분류 명칭 ()	00%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11] (6자리 코드)	1순위 소분류 명칭 ()	00%	2순위 소분류 명칭 ()	00%	3순위 소분류 명칭 ()	00%	

연구개발과제명[12]	국문				
	영문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법인등록번호		
			기관유형[17]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연구개발기간[13]	1단계	전체[13-1]	YYYY. MM. DD - YYYY. MM. DD(년 개월)		
		1년차[13-2]	YYYY. MM. DD - YYYY. MM. DD(개월)		
		2년차[13-2]	YYYY. MM. DD - YYYY. MM. DD(개월)		
		n년차[13-2]	YYYY. MM. DD - YYYY. MM. DD(개월)		

연구개발비[14]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14-1]	기관부담연구개발비[14-2]		그 외 기관 지원금[14-3] 지방자치단체 등		총 연구개발비		
단계	연 도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1	1차연도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0
	2차연도								
	N차연도								
	합계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해당 시 작성)	기관명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역할	기관유형[16]
공동연구개발기관[15]						*수요*	
						공동	

연구개발과제 실무책임자[17]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18-1]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18-2]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18-2]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삭제 후 제출합니다.)
작성 후 CMS(https://www.kicox.or.kr/cluster)에 등록합니다.

1. 보안등급: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V] 표시합니다.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5)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2. 중앙행정기관명: 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3. 전문기관명: 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을 기재합니다.

4. 세부사업명: 해당 과제의 세부사업명을 기재합니다.

5. 내역사업명: 지원대상분야 중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은 산단 내 공급-수요기업 연계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선택, 나머지 분야는 R&BD네트워크구축·운영으로 선택

6. 공고번호: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

7. 연구개발 과제번호: 과제 신청 시 클러스터사업관리시스템(CMS)에서 부여되는 번호 8자리를 기재합니다.

8. 선정방식: 공고문에서 제시한 선정방식을 기재합니다([V] 표시).

9. 지원대상분야: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세부관리지침 제78조에 따른 지원대상분야를 기재합니다.

10. 산업기술분류: 과제에 해당하는 산업기술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분류명과 비중을 기재하며, 3개 순위를 합산하여 비중이 100이 되도록 기재합니다.
 (예) : 1순위 내열소재(800301) 100%

11.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중 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분류명과 비중을 기재하며, 3개 순위를 합산하여 비중이 100이 되도록 기재합니다.
 (예) :1순위 항공안전기술(EI0701) 80% 2순위 인적안전기술(EI0803) 20%

12.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13. 연구개발기간: 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전체: 과제 수행 전체기간으로서 과제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기재합니다.
 2) 다년도 과제의 경우 각 연차의 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14. 연구개발비: 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현금과 현물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15.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1)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

16. 기관유형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8)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10)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1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12) 1)부터 12)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17. 연구개발과제 실무책임자: 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실무담당자를 기재합니다.

18. 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날인
 1) 연구책임자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
 2) 연구개발기관명과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인감(영리기관) 혹은 직인(비영리기관) 날인(예: ㈜산단공 대표이사 이OO)

〈 요 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세부사업명[1]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공고번호[3]	제20xx-xx호	
내역사업명[2]	R&BD네트워크구축·운영[] 산단내 공급-수요기업 연계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 []				연구개발 과제번호[4]		
지원대상 분야[5]	단년도	유망기업맞춤형 R&D[] 디지털전환형 R&D[] 혁신기업성장형 R&D[]					
	다년도 중형	공동비즈니스형 R&BD[]					
	다년도 대형	대개조산단협업형 R&BD[] 밸류체인고도화 R&BD[]					
	국제규범 공동대응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					
기술분류[6]	산업기술분류 (6자리 코드)	1순위 소분류 명칭 ()	00%	2순위 소분류 명칭 ()	00%	3순위 소분류 명칭 ()	00%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6자리 코드)	1순위 소분류 명칭 ()	00%	2순위 소분류 명칭 ()	00%	3순위 소분류 명칭 ()	00%
	녹색기술분류[7]	대분류/중분류/기술(코드)					
	미래유망기술(6T)분류[8]	분야/중분류/기술명(코드값)					
	국가중점과학기술분류[9]	분야/중점분야/기술명(코드값)					
연구개발과제명[10]							
전체 연구개발기간[11]	YYYY. MM. DD - YYYY. MM. DD(년 개월)				기술료[12]	징수[V] 비징수[]	
총 연구개발비[13]	총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천원,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 천원)						
연구개발단계[14]	기초[] 응용[] 개발[] 기타(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기술준비도(TRL)[15] (해당 단계를 숫자로 작성)	착수시점 기준[] 종료시점 목표[]	
기술수명주기[16]	착수시점 기준[] 완료시점 목표 [] 현재시점[]						
연구개발과제 유형[17] (해당 시 작성)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해당없음[V]						
	산업고도화형[] 사회문제해결형[] 신산업창출형[] 해당없음[V]						
	R&D 샌드박스(일반)[] R&D 샌드박스(지정)[] 해당없음[V]						
연구개발과제 특성[18] (해당 시 작성_중복체크)	IP R&D연계[] 표준연계[] 디자인연계[] BI연계[] 경쟁형R&D[] 국제공동[] 안전관리형[] 챌린지 트랙[] 복수형R&D[] 대형통합형[] 서비스형[] 국가핵심기술[] 탄소중립[] 해당없음[V]						
연구개발 목표[19] 및 내용[20]	최종 목표	[최종목표] ○ [1단계-1차 연도 목표] ○ [1단계-2차 연도 목표] ○ [1단계-N차 연도 목표] ○					
	전체 내용	[1단계-1차 연도 개발내용] ○ [1단계-2차 연도 개발내용] ○ [1단계-N차 연도 개발내용]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2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기술기여도]

연구개발 기관명	기술기여도(단위: %)						
	연구개발종료 1년차	연구개발종료 2년차	연구개발종료 3년차	연구개발종료4 년차	연구개발종료 5년차	연구개발종료 6년차	연구개발종료 7년차
XXXXX							
XXXXX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삭제 후 제출합니다.)
작성 후 CMS(https://www.kicox.or.kr/cluster)에 등록합니다.

1. 세부사업명: 해당 과제의 세부사업명을 기재합니다.

2. 내역사업명: 지원대상분야 중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은 산단 내 공급-수요기업 연계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 선택, 나머지 분야는 R&BD네트워크구축·운영으로 선택합니다.

3. 공고번호: 표지에 기재한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 과제번호: 과제 신청 시 클러스터사업관리시스템(CMS)에서 부여되는 번호 8자리를 기재합니다.

5. 지원대상분야: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세부관리지침 제78조에 따른 지원대상분야를 기재합니다.

6. 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기술분류를 기재합니다.
(예) : [산업기술분류] 1순위 내열소재(800301)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1순위 항공안전기술(EI0701) 2순위 인적안전기술(EI0803)

7. 녹색기술분류: 해당되는 과제의 녹색기술분류를 기재합니다. (예) 예측기술/기후변화 예측 및 영향평가/기후변화 예측 및 모델링개발기술(111)

8. 미래유망기술(6T)분류: 해당되는 과제의 미래유망기술(6T)분류를 기재합니다. (예) ET/환경기반/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제거기술(050111)

9. 국가중점과학기술분류: 해당되는 과제의 국가중점과학기술분류를 기재합니다. (예) ICT융합 신선업 창출 분야/SW·인터넷/지식 기반 빅데이터 활용기술(010101)

10.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11. 전체 연구개발기간: 과제 수행 전체기간으로서 과제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기재합니다.

12. 기술료: '5.지원대상분야'에서 선택가능한 모든 과제는 기술료 징수대상 연구개발과제입니다.

13. 총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총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14. 연구개발단계: 해당되는 과제의 연구개발단계 유형에 [V] 표시합니다.
1)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2)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3)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4) 기타는 기초, 응용, 개발 등 3가지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5. 기술준비도(TRL):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성숙도로서 최종 연구개발 목표, 내용, 최종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9단계 중 해당하는 단계를 선택합니다.(**※상세한 내용은 마지막 장 참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초연구단계: 1단계(기초 이론·실험), 2단계(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2) 실험단계: 3단계(연구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4단계(연구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3) 시작품단계: 5단계(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단계(시범규모의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4) 제품화단계: 7단계(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단계(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5) 사업화단계: 9단계(사업화)

16. 기술수명주기: 과제에 해당되는 기술수명주기를 시점별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중 선택합니다.

17. 연구개발과제 유형: 공고상의 RFP 또는 품목서를 참고하여 유형에 [V] 표시합니다.(단년도, 다년도 R&D 과제는 해당사항이 없음)

18. 연구개발과제 특성: 공고상의 RFP 또는 품목서를 참고하여 과제의 특성에 [V] 표시합니다.(단년도, 다년도 R&D 과제는 해당사항이 없음)

19. 연구개발 목표: 과제의 목표를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20. 연구개발 내용: 과제의 내용을 1,0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21.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시설·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경우에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

목 차

1. ····· (페이지 표기)
 1-1. ····· (페이지 표기)
 1-2. ····· (페이지 표기)

2. ····· (페이지 표기)
 2-1. ····· (페이지 표기)
 2-2. ····· (페이지 표기)
 2-3. ····· (페이지 표기)

3. ····· (페이지 표기)
 3-1. ····· (페이지 표기)
 3-2. ····· (페이지 표기)
 3-3. ····· (페이지 표기)
 3-4. ····· (페이지 표기)

4. ····· (페이지 표기)
 4-1. ····· (페이지 표기)
 4-2. ····· (페이지 표기)
 4-3. ····· (페이지 표기)

5. ····· (페이지 표기)
 5-1. ····· (페이지 표기)
 5-2. ····· (페이지 표기)
 5-3. ····· (페이지 표기)

6. ····· (페이지 표기)
 6-1. ····· (페이지 표기)
 6-2. ····· (페이지 표기)

7. ····· (페이지 표기)
 7-1. ····· (페이지 표기)
 7-2. ····· (페이지 표기)
 7-3. ····· (페이지 표기)

8. ····· (페이지 표기)
 8-1. ····· (페이지 표기)
 8-2. ····· (페이지 표기)

연구개발계획서	[V] 신청용 [] 협약용			기술료 징수[V] 비징수[]
중앙행정기관명	산업통상부	사업명	세부사업명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전문기관명	한국산업단지공단		내역사업명	R&BD네트워크구축·운영[] 산단 내 공급-수요기업 연계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 []
연구개발과제명(과제번호)	()			

※ 주석으로 된 파란글씨 및 작성요령 표는 삭제 후 제출
※ 본문내용은 돋움체 12pt, 표는 돋움 8pt로 작성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1-1.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개요

※ 다년도 대형 사업화 기술개발과제 신청시 '□ 대상 산업단지 및 지역 환경분석'을 첫 번째 항목으로 추가하여 작성

□ 연구개발기술(제품)의 정의 및 범위

o
 -
 •
o
 -
 •

1-2. 연구개발과제의 배경 및 필요성

□ 배경

o
 -
 •

□ 필요성

o
 -
 •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개요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기본 개념도', '그림' 또는 '사진' 등으로 작성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용도' 및 '적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작성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의 배경 및 필요성, 정부 정책 및 RFP/품목요약서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기재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2-1. 최종목표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은 단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1단계만 존재)

(1) 최종목표 ※ 전체 목표를 표 또는 그림 등을 통해 요약하여 작성

□

o

–

〈연구개발성과 성능 목표〉

평가 항목 (주요성능 Spec[1])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2] (%)	세계최고 수준 보유국/ 보유기업 (/)	연구개발 전 국내수준	개발 목표치			표준 (시험) · 인증 기준[3]	기준설정 근거[4]	평가 방법[5]
					1단계					
			성능수준	성능수준	1차 년도	2차 년도	n차 년도			
1.										
2.										
3.										
4.										
5.										
6.										
7.										
8.										
9.										

〈기술개발 핵심어〉

한글					
영문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최종 목표
- 최종목표와 연구개발성과 성능 목표,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목표 지표(참고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작성)와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를 작성
- 개발 목표는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의 수준, 성능 품질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 **(주의사항) 연구개발과제 성과와 무관한 양적인 단순 수치는 작성하지 말 것**

○ 평가 방법 및 평가 항목은 다음에 따라 작성
- 기술개발 및 목표와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작성하고 **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수립 및 기재**
- **연구개발의 탁월성을 입증하는 질적 대표 항목을 기술**
 ※ 평가항목의 설정근거는 목표의 설정 이유를 현재 국내외 기술수준 등에 근거하여 기술
 주1) 주요 성능(Specification)은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정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제시하여함
 주2) 비중은 각 구성성능(Specification)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가중치의 합이 100%가 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 **향후 진도점검 및 최종평가 시 연구목표의 달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함**
 주3)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 등을 위해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 목표치 등을 제시
 주4) 인증기준 및 시험방법 표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예: ASTM···, ISO···, KS··· JIS···등에서 제시하는 세부규격)
 주5) 평가방법은 최종 평가 시에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자체 평가" 또는 "수요기업 평가"로 기재

○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KOLAS 성적서 또는 일반 시험성적서, 보고서 등을 포함함
- 공인시험기관이란 KOLAS인증 시험기관 또는 자체장비 및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공식적으로 기관장 명의 또는 시험분석 부서장 명의(예: ○○연구원장, ○○신뢰성센터장)로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기관을 말함
- 자체 평가를 제시하는 경우 객관성을 확보를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제3자가 입회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항목별로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을 구체적으로 기재
- 수요기업 평가는 연구개발기관에 포함된 수요기관의 수요기업 평가를 제시하는 것을 말함

○ 핵심어는 다음에 따라 작성
- 동 개발과제의 핵심적 용어로써 과제 관련 특수 용어를 의미함
- 관련 업계, 협회나 학회 등에서 **표준화되어 정의되었거나 일반화된 정식 명칭**을 기재
- 5개 단어를 한글 및 영문으로 반드시 기입하여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전문용어 또는 약어에 대한 주석처리(약어는 full name 표기) 권고

〈연구개발성과의 지표 및 목표〉 ※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선택적으로 해당하는 항목만 작성

성과지표명 \ 연도			1단계-1차 연도 (YYYY)	1단계-2차 연도 (YYYY)	계	가중치 (%)
등록·기탁 지표	지표1	목표(연차별)				
	지표2	목표(연차별)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지표1	목표(연차별)				
	지표2	목표(연차별)				
계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연구개발성과의 지표 및 목표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제4항 및 별표 4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대상과 범위**

구분	대상	등록 및 기탁 범위
등록	논문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 논문(전자원문을 포함합니다)
	특허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보고서원문	연구개발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원문
	연구시설·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 원 이상 (부가가치세, 부대비용 포함) 연구시설·장비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 모든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연차보고, 단계보고 및 최종보고가 완료된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을 요약한 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서열·발현정보 등 유전체정보, 서열·구조·상호작용 등 단백체정보, 유전자(DNA)칩·단백질칩 등 발현체 정보 및 그 밖의 생명정보
	소프트웨어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표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표준,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공식 표준정보[소관 기술위원회를 포함한 공식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가 공인한 단체 또는 사실표준화기구에서 채택한 표준정보를 포함한다]
기탁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미생물자원, 인간 또는 동물의 세포·수정란 등 동물자원, 식물세포·종자 등 식물자원, DNA, RNA, 플라스미드 등 유전체자원 및 그 밖의 생물자원
	화합물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신품종	생물자원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 및 관련 정보

*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기술실시(이전), 기술료, 사업화(투자실적, 제품화, 매출액, 수출액, 고용창출, 고용효과, 투자유치), 비용절감, 기술(제품)인증, 시제품 제작 및 인증, 신기술지정, 무역수지개선,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지원(기술지도), 교육지도, 인력양성(전문연구인력, 산업연구인력, 졸업자수, 취업, 연수프로그램 등), 법령 반영, 정책활용, 설계 기준 반영, 타 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기술무역, 홍보(전시), 국제화 협력, 포상 및 수상, 기타 연구개발 활용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과제 특성별로 고유한 성과지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정량적 목표 항목의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순번	평가항목 (성능지표)	구분	평가방법	평가환경
1	회수율	1단계-1차 연도	자체 평가 (관련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제3자 입회)	세부환경은 아래의 [정량적 목표 항목의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참고
		1단계-2차 연도	수요기업 평가	수요기업의 품질요구서
		1단계-N차 연도	공인시험기관 평가	ISO/IEC -ㅇㅇㅇㅇㅇ
2	정밀도	1단계-1차 연도		
		1단계-2차 연도		
		1단계-N차 연도		

[정량적 목표 항목의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 표에 기재가 어려운 경우 추가 기재

o

–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평가항목의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은 연차별로 표에 상세히 작성

○ 각 평가항목의 평가방법과 시작품·시제품을 측정하기 위한 조건/환경에 대해서 자체평가 또는 수요기업 평가에 해당하여 상세 기재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기재합니다.(표에 서술이 가능한 경우는 기재 불필요)

(3) 보안등급의 분류 및 해당 사유

보안등급 분류	보안과제 (), 일반과제 ()
결정 근거 및 사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9조(보안등급 분류기준)에 근거하여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하고 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

※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2조제2항 및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보안관리규정(수립 필요)에 의거 관리 되어야 함

번호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5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 상기 검토 결과, 한 가지 항목이라도 "예"가 있을 경우, 보안 과제로 분류

2-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1단계]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은 단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1단계만 존재)

(1) 1차 연도

① 개발 목표

[주관연구개발기관(기관명 기입)]

o

[공동연구개발기관1(기관명 기입)]

o

[공동연구개발기관N(기관명 기입)]

o

② 개발 내용 및 범위 **※ 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주관연구개발기관(기관명 기입)]

o

[공동연구개발기관1(기관명 기입)]

o

[공동연구개발기관N(기관명 기입)]

o

(2) 2차 연도

① 개발 목표

[주관연구개발기관(기관명 기입)]

o

[공동연구개발기관1(기관명 기입)]

o

[공동연구개발기관N(기관명 기입)]

o

② 개발 내용 및 범위

[주관연구개발기관(기관명 기입)]

o

[공동연구개발기관1(기관명 기입)]

o

[공동연구개발기관N(기관명 기입)]

o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보안등급의 분류 및 해당 사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9조(보안등급 분류 기준)을 참조하여, 계획서 표지에 있는 '보안등급' 분류에 대한 결정사유 기입

○ 연차별 개발 목표 및 내용
-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차별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을 작성
- 기술개발의 최종 목표와 연차별 개발 목표 및 내용·범위를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과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개조식으로 구체적으로 서술
- 개발 내용 및 범위는 타 연구개발사업과제와 기존 연구수행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 조사하여 기지원 · 기개발 과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성 있는 내용으로 서술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 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서술하되 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는 가능한 한 그림으로 표현
- 연차별 주요 개발 내용 작성시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전체 연구개발기간에 해당되는 연차별 사항 기입)
- 수행 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 요소 및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개발내용 및 범위"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담당하는 부분을 기술·표시
- 연구개발기관별 연차별 개발목표,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기술(공동연구개발기관이 없는 경우 생략)

○ 연구개발계획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전문용어 또는 약어에 대한 주석처리(약어는 full name 표기) 권고

2-3.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 및 주요 결과물

(1) 전체 수행일정

일련 번호	개발 내용	추진 일정		
		1단계		
		1차 연도	2차 연도	N차 연도
1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	------	------
2	설계도면 작성	------	------	------

※ 다년도(프로젝트 R&D, 스마트제조 R&D) 과제에 한해 작성(단년도 과제의 경우 아래 연차별 일정표로 대체)

(2) 연차별 수행일정

① 1차 연도

일련 번호	개발 내용	1단계-1차 연도(개월)												기간[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	------	------	------	------	------	------						
2	설계도면 작성			------	------	------	------	------	------	------				
3	진공펌프 설치													
4	전체시스템 구성													
5	주요평가방법에 따른 성능평가항목 결정													
6	실험실에서 성능평가 모의 실험													
7	성능평가 표준방법 확립													
8	1차 시제품 설계도면 작성													
9	1차 시제품 가공 및 평가													

② 2차 연도

일련 번호	개발 내용	1단계-n차 연도(개월)												기간[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	------	------	------	------	------	------						
2	설계도면 작성			------	------	------	------	------	------	------				
3	진공펌프 설치													
4	전체시스템 구성													
5	주요평가방법에 따른 성능평가항목 결정													
6	실험실에서 성능평가 모의 실험													
7	성능평가 표준방법 확립													
8	2차 시제품 설계도면 작성													
9	2차 시제품 가공 및 평가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개발내용 항목은 2-1. 최종목표 및 2-2. 정량적 목표 항목의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에서 기술한 항목과 일치하게 작성
- 개발내용 추진일정은 점선으로 표시
- 각 내용별 선, 후행 관계를 명확히 표기
- 1차 연도부터 최종년도 까지의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추진일정을 작성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3-1. 기술개발 추진방법·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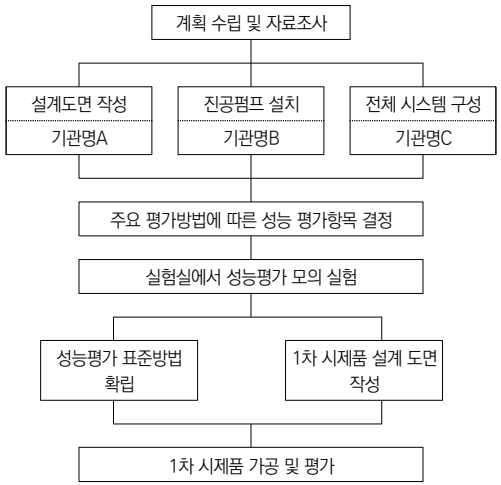
※ 기 보유 기술 활용 및 외부기술 도입 등을 통한 목표달성 기간 단축과 연구개발비 절감 방안을 포함하여 작성

o

–

3-2. 기술개발 추진체계

※ 다음 예시와 같이 작성함 (예 : 저진공 펌프 개발) 표가 아닌 별도 이미지로 작성 가능

<table>
<tr><td>1단계-1차 연도
(20 년)</td><td>
</td></tr>
<tr><td>1단계-2차 연도
(20 년)</td><td>※ 다년도 과제에 한해 작성</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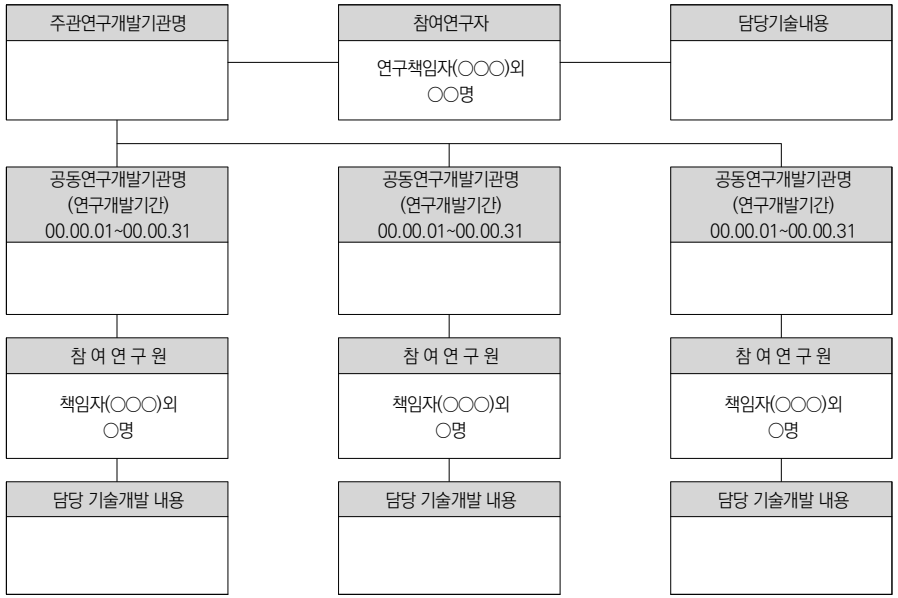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기술개발 추진 방법·전략
- 개발목표 달성을 위하여 무엇을 활용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 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
- 세부개발 내용별 수행 방법, 수행 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계획된 실험과정 등을 기술

○ 기술개발 추진 체계
- 개발내용의 연차별 목표와 상호간의 연관 관계 및 선 · 후 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
- 연구개발기관별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기술(공동연구개발기관이 없는 경우 생략)

○ 1차 연도부터 최종년도 까지의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추진 방법 작성

3-3. 기술개발팀 편성도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상기 그림을 참조하여 1페이지로 작성
○ 참여연구자에는 책임자도 포함
○ 기관별 담당 기술개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할 것
○ 연차별로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개발체계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는 동 사항을 추진 체계에 반영할 수 있음
○ 담당 기술개발 내용은 '2-2 연차별 개발 목표 및 개발 내용' 및 '3-2 기술개발 추진 체계'에서 기술한 항목과 일치하게 작성

3-4. 과제 수행 중 일자리 창출 계획·방법

(1) 일자리 창출 계획 및 효과

※ 본 과제 관련 일자리 창출 계획과 일자리 창출 예상 실적 등을 정량화하여 산출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구체화

※ 연차별 채용 예정 인원 및 채용 방법 등에 대해 서술

※ 신규채용 실적 및 계획_(연구개발과제로부터 채용하는 경우 기재 必)

※ 채용예정이라도 국적을 필히 기재하고, 청년 채용은 내국인에 한함

기관명 (주관/공동)	채용년도 (n차 연도)	채용(예정)일	성명 (국적)	참여기간	구분 (청년(의무), 청년(추가), 일반)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주관)	2022 (1차 연도)	YYYY.MM.DD	○○○ (한국)		청년(의무)
	2023 (2차 연도)	YYYY.MM.DD	채용예정 (한국)		청년(추가)
	202X (n차 연도)	YYYY.MM.DD	채용예정 (한국)		청년(의무)
공동연구개발기관명 (공동)	2022 (1차 연도)	YYYY.MM.DD	○○○ (한국)		일반

(2)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별 일자리 창출 계획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별 일자리 창출 계획, 채용 예정 인원 및 채용 방법 등에 대해 서술

[주관연구개발기관(기관명 기입)]

o

[공동연구개발기관1(기관명 기입)]

o

[공동연구개발기관2(기관명 기입)]

o

-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4-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o

-

4-2.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 연구개발성과로부터 해당하는 측면에 대해 기재

[과학·기술적 측면]

o

-

[경제적 · 사회적 측면]

o

-

[인프라 측면]

o

-

4-3. 연구개발성과의 기술기여도 ※ 기술료 납부 의무기관만 작성

연구개발 기관명	기술기여도(단위: %,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기재)						
	연구개발종료 1년차	연구개발종료 2년차	연구개발종료 3년차	연구개발종료 4년차	연구개발종료 5년차	연구개발종료 6년차	연구개발종료 7년차
AAAAA	00.0	00.0	00.0	00.0	00.0	00.0	00.0
BBBBB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작성 요령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와 그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기재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대상에 기재한 항목을 기재)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조(연구개발성과) 법 제2조제5호에서 "제품, 시설·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무형의 성과"란 다음 각 호의 성과를 말한다.

1. 제품
2. 시설·장비
3. 논문
4. 특허 등 지식재산권
5. 법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또는 성과활용보고서의 원문
6. 연구개발과제에서 창출 또는 파생된 기술의 요약정보
7. 생명자원
8. 소프트웨어
9. 화합물(化合物)
10. 신품종
11. 표준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성과에 준하는 유형·무형의 성과

○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과학·기술적, 경제·사회적, 인프라 측면에서 기대효과·파급효과 등을 기재
- (과학적 성과) 학문 분야 편차를 보완한 표준화된 영향력 지수, 피인용 지수 등
- (기술적 성과) 표준 특허, 3극 특허, 특허의 잠재적 가치(발명진흥회 SMART, 특허정보원 K-PEG 등), 국제 표준 채택 등
- (경제적 성과) 기술료, 매출액 기여, 수입대체 효과, 원가절감 기여, 고용 창출 등
- (사회적 성과) 해당분야 졸업자 수, 추가고용규모, 정책활용도, 언론 홍보건수 등
- (인프라 성과) 장비 공동 활용률, 성능 달성도, 시험 인증 통과 여부 등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3조1항**제9호**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술기여도"라 함은 연구개발활동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의미함
* 기술료 산정방식 : R&D성과 매출액 X **기술기여도** X 비율(중소기업2.5%, 중견기업5%, 대기업·공기업·기타 10%)
** 기술기여도는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산정하여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기재하되, 해당 산식 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협약에서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frac{\textbf{정부지원연구개발비}}{\textbf{총 연구개발비}(\text{정부지원연구개발비+민간현금+민간현물})}$$

*** 기술료 납부 상한금액 : 중소기업(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중견기업(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대기업·공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공기업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에는 기술료 납부 의무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5.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

5-1. 국내·외 기술과 시장 현황 ※ 기술 수준이 파악 가능토록 기술

(1) 국내 기술의 수준 및 시장 동향 ※ 신청 기관의 기술수준 등을 포함

[국내 기술 동향 및 수준]

o
-

[국내 시장 규모 및 수출 · 입 현황] ※ 직접 관련된 시장 규모(산출근거 제시요망)

o
-

(2) 국외 기술의 수준 및 시장 동향

[국외 기술 동향 및 수준]

o
-

[국외 시장 규모 현황]

o
-

5-2. 관련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등

(1) (연구개발기관) 본 기술/제품 관련 지식재산권, 표준화, 인증기준 현황

o
-

(2) (국내 경쟁 기관) 본 기술/제품 관련 지식재산권, 표준화, 인증기준 현황

o
-

(3) (국외 경쟁 기관) 본 기술/제품 관련 지식재산권, 표준화, 인증기준 현황

o
-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국내외 기술과 시장현황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제안한 기술과 직접관련된 시장점유율, 기술수준 등을 작성하고 이와 함께 국내외 경쟁기관의 시장점유율 및 기술수준 등을 기재

○ 관련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제안한 기술과 직접관련된 지재권 등 현황을 작성하고 국내외 경쟁기관의 원천 지재권 현황 등을 기재
- 제품 판매를 위한 인증기준, 표준화 관련 사항을 기재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기재

5-3. 경제적 성과 창출계획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작성

(1) 본 과제를 통한 생산 계획

구분		(년) 개발 종료 후 1년	(년) 개발 종료 후 2년	(년) 개발 종료 후 3년
국내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판매단가(원)			
	국내매출액(백만원)			
해외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판매단가($)			
	해외매출액(백만$)			
당사 생산능력1)				

※ 1) 당사 생산능력은 본 기술제품 사업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설비투자를 고려하여 적절한 단위 (예: 개수, 무게 등)로 작성

(2) 본 과제를 통한 투자 계획

(단위: 백만원)

항목		(년) 개발 종료 후 1년	(년) 개발 종료 후 2년	(년) 개발 종료 후 3년
매출원가[1]				
판매관리비[2]				
자본적 지출	토지(A)			
	건물/구축물(B)			
	기계장치등(C)			
자본적지출 합계(A+B+C)				

※ 매출원가[1] :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 매출원가 총액

※ 판매관리비[2] : 인건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등 판매관리비 총액

(3) 본 과제를 통한 사업화 전략(해외시장 진출 포함) 및 기대효과

○ 제품홍보, 판로확보, 판매전략 등의 사업화 추진전략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업명1]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작성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사업화 형태 : o 수요처 : o 예상 단가 :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사업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o
사업화 계획 및 일정	o o
기대효과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명2]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사업화 형태 : o 수요처 : o 예상 단가 :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사업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o
사업화 계획 및 일정	o o
기대효과	

6.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6-1. 안전조치 이행계획

[연구소/연구실 단위 안전조치 이행계획]

o 안전책임자의 지정·운영

-

o 안전관리규정의 제정·운영

-

o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라 정하는 금액이상으로 계상

• 대학·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은 안전관리비를 필수 계상하여 운영 중임

o 안전사고발생시 보고 및 조치

-

o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및 행동요령

-

o 안전교육 실시 등

-

작성 요령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연구소/연구실 단위 안전조치 이행계획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참조하여 작성

구분	체크항목
안전관리 체계	o 기관 내 안전관리 규정을 제정/적용하고 있다. - 기관의 규정명칭 기재 : (예시) KICOX 일반보안규정, 일반보안규칙, 정보보안규칙
	o 안전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자체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안전 책임자 부서 및 성명기재 : 정보보안팀 ○○○ - 자체 보안점검 실시 일자 기재 : 20xx.xx.xx
	o 안전사고에 발생 시 대처방안, 보고절차 및 방지대책 수립되어 있다. - 규정의 조문 또는 가이드 기재 : (예시) 안전 사고 처리기준
	o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안전점검 및 진단 일자 기재 : 20xx.xx.xx
	o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안전교육 실시 일자 기재 : 20xx.xx.xx
연구시설 안전 관리	o 연구시설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적용하고 있다.
	o 연구시설 및 장비에 보호장비, 보호구 등이 설치되어 있다.

6-2. 보안조치 이행계획 ※ 과제 선정 이후 협약 시 작성하여 제출(신청시 미제출)

o 보안관리체계 이행계획

-

o 참여연구자 관리계획

-

o 연구개발내용 및 결과의 관리계획

-

o 연구시설 관리계획

-

o 정보통신망 관리계획

-

작성 요령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보안조치 이행계획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제12조2항 및 【별표】보안관리 조치사항(제12조 관련)을 참조하여 작성
- 과제 선정 이후 협약 시 작성하여 제출하며, 【별표】보안관리 조치사항(제12조 관련)에 따라 세부 조치사항에 대해 요약하여 작성 제출

구분	체크항목
보안관리 체계	○ 기관 내 보안관리규정을 제정/적용하고 있다 - 기관의 규정명칭 기재 : (예시) KEIT 일반보안규정, 일반보안규칙, 정보보안규칙
	○ 보안관리 조직이 있으며, 자체 보안점검실시 등 잘 운영되고 있다 - 보안담당자 부서 및 성명기재 : ○○보안팀 ○○○ - 자체 보안점검 실시 일자 기재 : 20xx.xx.xx
	○ 보안교육을 정기적(1회이상/연)으로 실시하고 있다 - 보안교육 실시 일자 기재 : 20xx.xx.xx
	○ 보안사고에 대한 방지대책 및 비상시 대응계획이 준비되어 있다 - 규정의 조문 또는 가이드 기재 : (예시) 정보보안 사고(위규) 처리기준
참여연구자 관리	○ 연구개발과제별로 참여연구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해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과 귀국보고 실시를 하고 있다
	○ 퇴직예정자에 별도로 보안 서약서 징구, 반출자료 안서성 검토, 연구성과물 회수, 전산망 접속 차단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외국인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영문보안서약서 작성, 출입지역 제한, 반출·반입 물품 제한, 특이동향을 별도 관리하고 있다
연구개발 내용/결과 관리	○ 주요 연구자료 및 성과물의 무단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 보안성 검토 방법 및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 기술이전 관련 내부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
연구시설 관리	○ 연구시설 보안관련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이행하고 있으며, 연구시설 출입자에 대한 개인별 출입권한 차등을 부여하고 있다
	○ 주요 시설에는 보안장비 설치와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 외부 입주기관의 연구 시설 내부 출입통제 조치를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관리	○ 정보통신망 보안관련 내부규정 또는 지침이 구비되어 있다
	○ 보안관리책임자의 승인 항목이 구분되어 있다
	○ 주요 데이터에 대해 백업을 실시하고 있다
	○ 개인용 정보통신장비(노트북, USB메모리)에 대하여 인가/관리중이다
	○ 전산망 보호를 위한 HW 및 SW 등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 직책, 임무별 열람 권한을 차등화하여 부여하고 있다

7. 연구개발기관 현황

7-1. 연구책임자(주관연구개발기관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책임자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나. 학력 ※ 학력은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순으로 기재

취득연월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국가연구개발 실적 및 현황 ※ 최근 5년간 5개 내외로 과제와 연관된 실적 작성하되 현재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추가하여 필수적으로 작성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 개발기관 당시 소속기관	전체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책임자/ 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 완료)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 ※ 최근 5년간 5개 내외로 과제와 연관된 실적 작성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yy			
			yyyy			

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 ※ 최근 5년간 5개 내외로 과제와 연관된 실적 작성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 순번/등록자 수)	비고 (출원/등록)

※ 출원·등록 순번/등록자 수 : 총 3명의 출원·등록자 중 첫 번째 출원·등록자의 경우는 1/3로 기재

사. 그 밖의 수상경력 등 대표적 실적 ※ 최근 5년간 5개 내외로 과제와 연관된 실적 작성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산업통상부 장관표창			yyyy
			yyyy

(2)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 ※ 과제의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없을 경우 삭제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나. 학력 ※ 학력은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순으로 기재

취득연월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국가연구개발 실적 및 현황 ※ 최근 5년간 5개 내외로 과제와 연관된 실적 작성하되 현재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추가하여 필수적으로 작성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 개발기관 당시 소속기관	전체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책임자/ 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 완료)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 ※ 최근 5년간 5개 내외로 과제와 연관된 실적 작성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yy			
			yyyy			

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 ※ 최근 5년간 5개 내외로 과제와 연관된 실적 작성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자 수	비고 (출원/등록)

※ 출원·등록 순번/등록자 수 : 총 3명의 출원·등록자 중 첫번째 출원·등록자의 경우는 1/3로 기재

사. 그 밖의 수상경력 등 대표적 실적 ※ 최근 5년간 5개 내외로 과제와 연관된 실적 작성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산업통상부 장관표창			yyyy
			yyyy

(3)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 전체 참여연구자(연구개발기관책임자, 학생연구자포함)에 대해 작성하며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참여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은 등록이 불가함

번호	소속 기관 (역할)	신규 (청년의무/추가/기타) /기존/ 시간선택 /외부	성명 (국적)	직위	생년월일 (성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참여 기간 (년/월)	본 과제 인건비 계상률 (%) (A)	타 국가연구 개발사업 인건비 계상률 (%) (B)	전체 인건비 계상률 합계 (A+B, %)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 과제수 (3책/5공)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1	㈜산단공 (주관)	기존	김OO (한국)	팀장	'86.12.02 (남)	박사	전자 공학	'12	연구총괄	'21.4~ 24.12	30%	70%	100%	3 (3/3)
2		시간 선택	박oo (한국)	책임	'81.03.02 (여)	박사	컴퓨터 과학	'08	데이터 연계	'21.9~ 24.12	50%	-	50%	1 (0/1)
3	㈜키콕스 (공동)	외부	이oo (한국)	수석	'75.03.02 (남)	박사	기계 공학	'95	장비설계	'21.12~ 22.12	50%	-	50%	1 (0/1)
										'23.1~ 24.12	100%	-	100%	1 (0/1)
4	㈜클러스터 (공동)	신규 (청년 의무)	기oo (한국)	선임	'86.03.02 (남)	박사	에너지 공학	'12	데이터 측정	'21.6~ 24.12	30%	-	30%	1 (0/1)
5	㈜클러스터 (공동)	신규 (청년 추가)	임oo (한국)	선임	'86.03.07 (남)	박사	에너지 공학	'12	데이터 측정	'21.4~ 24.12	30%	-	30%	1 (0/1)
6	OO대학교 (공동)	기존	이oo (한국)	박사 과정	'88.07.02 (여)	석사	화학 공학	'20	기류, 열해석	'21.4~ 24.2	20%	40%	60%	3 (2/3)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

※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비영리만 가능)

번호	소속 기관	신규 (청년의무/추가/기타) 기존/ 시간선택/ 외부	성명 (국적)	직위	생년월일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참여 기간 (년/월)	본 과제 인건비 계상률 (%) (A)	타 국가연구 개발사업 인건비 계상률 (%) (B)	전체 인건비 계상률 합계 (A+B, %)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1													

다. 여성 참여연구자 비율

※ 학생연구자, 연구지원인력, 채용예정인원은 모수에 미포함하여 계산
(연구개발시작일 기준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대상)

(단위 : 명, %)

본 과제의 총 참여연구자 수	본 과제의 여성참여연구자 수	본 과제의 총 참여연구자 중 여성참여연구자 비율
5명	1명	20%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참여연구자의 기관 소속 여부는 4대보험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판단함
※ 청년 채용은 내국인에 한함

[참여연구자 현황]
○ 본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를 연도별로 모두 기재(신규채용 예정 연구원 포함하며, 구체적인 채용대상자가 미확정되어 기재하기 어려운 항목은 공란 표기)
- 비영리기관의 연구지원 인력,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연구지원전문가 등은 참여연구자로 기재 불가
○ 소속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신규/기존/시간선택/외부 참여연구자에 대해서 명확히 표기하여야 함
- 신규 채용 구분 여부는 동 과제 수행을 위해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신규로 채용했거나 과제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로 구분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연구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는 참여연구자 성명란에 '채용 예정'으로 작성

* 신규 채용 구분 : 신규 채용 인력이 청년인력 의무채용의 경우 신규(청년의무), 청년인력 추가채용의 경우 신규(청년추가) 그 외 기타 신규 채용인 경우 신규(기타)로 표기
* 시간선택제근무 : 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여성 참여연구자'를 말함
* 외부인력 : 해당기관에 소속되지 않으나, 외부 참여연구자 참여 요건을 충족하여 참여하는 참여연구자를 말함(프리랜서, 타교학생, 실습연구원, 인건비가 미확보 된 비영리기관 소속 연구자)
* 신규 채용, 시간선택제 , 외부인력에 해당하는 않는 경우 기존으로 표기

○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必

○ 연구담당분야는 해당 과제 기술내용 중 담당 기술개발 내용을 명시
○ '과제참여기간'은 월 단위로 기재
○ 월단위로 '해당기간 인건비계상률'이 계획이 다를 경우 기간별로 구분하여 표기
- 단, 정부출연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연평균 인건비계상률 기재
○ 본 과제 인건비계상률(%)(A) 및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계상률(%)(B)은 1차 연도 시작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연구지원인력 현황]
○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지원 인력을 기재함
○ 본 과제 인건비계상률(%)(A) 및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계상률(%)(B)은 1차 연도 시작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여성참여연구자 비율]
○ [참여연구자]에 기재한 연구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학생연구자, 채용예정 인원은 모수에 미포함하여 계산(연구개발시작일 기준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대상)

7-2. 연구시설·장비 보유현황

보유기관	연구시설·장비명 (ZEUS 또는 자산등록번호)	구매일자	구매금액 (천원)	활용시기	연구개발 중 사용용도	현물부담 반영여부 (해당 시 "○")	현물부담금액 (천원)
		'2x.00.xx	000,000	'21.04~24.12			

※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ZEU번호를 기재하고 없을 경우 자산등록번호 기재

7-3.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

※ 비영리기관의 경우 순번 5부터 순번 16까지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 ※ 자본 전액 잠식(자본 총계가 음수일 경우)인 경우 사전 지원제외함

(단위: 천원, 백분율)

순번	구분 \ 기관명					
1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국적					
4	기관 유형 (대학, 정부출연연, 중소기업 등)					
5	최대 주주 성명/국적					
6	설립 연월일					
7	주생산 품목					
8	상시 종업원 수					
9	전년도 매출액					
10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11	부채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2	유동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3	자본잠식 현황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자본 총계	yyyy년			
			yyyy년			
			yyyy년			
		자본금	yyyy년			
			yyyy년			
			yyyy년			
14	이자 보상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5	영업 이익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6	대출형 투자유치금액 (부채총액에서 제외한 금액)		yyyy년			
			yyyy년			
			yyyy년			
17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자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을 말하며, 표지의 "실무담당자"와 다름)		성명			
			부서			
			직위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팩스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가 정확히 작성하되,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 등 모든 책임은 작성기관 및 작성자에게 있음.
-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의 경우만 작성하고 3개 기관 단위로 표를 작성 (기업수가 3개사 이상을 초과할 경우 기존의 표를 복사하여 신규로 작성)
- 자본총계 = 자본금 + 자본·이익잉여금 + 자본조정금 or 자산총계 − 부채총계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 × 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 자본잠식 여부 : 부분자본잠식(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을 경우), 자본전액잠식(자본총계가 -일 경우)
-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 대출형 투자유치 금액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액으로 부채비율 계산시 부채총액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한 경우 그 금액(부채비율 계산시 500%가 초과되어 대출형 투자유치 금액을 부채총액에서 제외하고 부채비율을 재산정한 경우에만 기입)

(2) 연구개발기관 국가 R&D, 기술이전 및 사업화, 보유특허 실적

※ 과제와 직접 관련된 최근 5년간의 실적 중심으로 작성하되, 과제 종료 후 5년이 초과하였더라도 해당 과제를 통한 기술이전/사업화 성과를 최근 5년 내 창출 시 작성 필요

o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실적 ※ 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

연구개발 기관명	연구개발과제명	해당과제의 주관연구 개발기관 / 연구개발기관의 역할(주관/공동)	연구개발기간 (참여기간)	개발내용 (핵심개발내용 요약)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비고 (수행중/완료)
㈜산단공	20um급 마이크로 LED 광원 소자 기술개발	oo전자 / 공동	19.01~22.12		산업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수행중
		㈜산단공 / 주관	20.01~20.12		산업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완료
㈜키콕스			yy.mm~yy.mm			

o 위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보유 지재권 출원 및 등록 현황 ※ 최근 5년간의 실적

연구개발기관명 (소유권자)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

o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에 대한 기술이전 실적 ※ 전체 실적 기재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기술이전 유형	기술실시계약명	기술실시기관명	기술실시발생일	기술료	기술료 누적 징수액

o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에 대한 사업화 실적 ※ 전체 실적 기재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사업화 방식[1]	사업화 형태[2]	지역[3]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국외		

작성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실적은 기업만 작성하며 기업별 작성
- ○ 동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보유 특허 등 지식재산권 현황에 대해 기재(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자체개발한 특허도 작성 가능)
- ○ 기술이전 및 사업화 발생 실적은 모든 연구개발기관이 작성하되 비영리기관(대학, 출연연 등)은 동 과제 참여연구자(책임자 포함)의 실적을 작성
-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에 대한 사업화 실적
 1. **사업화 방식: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2. **사업화 형태: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3. **지역: 국내 또는 국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에 등록된 것이어야 합니다.
- ○ 최근 5년내 동 과제와 직접 관련된 성과를 작성(과제와 무관한 특허는 작성 지양 요망)

8.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8-1. 연구개발비 지원·부담계획

(단위: 천원)

1단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A)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		
연차	연구개발기관 (기관역할)	기업유형		현금(B)	현물(C)	소계(D)	현금	현물	합계(E)
			비율(A/E)	비율(B/D)	비율(C/D)	비율(D/E)			
1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주관)	중소기업	800,000	20,000	180,000	200,000	820,000	180,000	200,000
			80.0%	10.0%	90.0%	20.0%			100%
	공동연구개발기관명 (공동)	대기업	%	%	%	%			%
	공동연구개발기관명 (공동)	중견기업	%	%	%	%			%
	공동연구개발기관명 (공동)	대학	%	%	%	%			%
			%	%	%	%			%
	소계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합계			%	%	%	%			%

※ 비율은 필수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기관부담현금(B/D), 기관부담연구개발비합계(D/E)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내림 처리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 신청 과제의 공고문의 연구개발기관 유형(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요기업, 그 외)에 따르는 연구개발비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
 - 연구개발기관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 비율을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할 것

8-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총괄표

(단위 : 천원)

비목	항목			1단계												합계
				1차 연도 (20XX)				2차 연도 (20XX)				n차 연도 (20XX)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역할)	공동연구개발기관명 (역할)	공동연구개발기관명 (역할)	소계	㈜산단공 (주관)	㈜키콕스 (공동)	OO대학교 (공동)	소계				소계	
직접비	인건비	내부(A)	현금													
			현물													
		외부(B)	현금													
		연구지원인력(C)														
		소계(A+B+C)														
	학생 인건비(D)															
	총 인건비 (E1=A+B+C+D)															
	인건비 비율(E1/M)															
	연구시설·장비비(F)		현금													
			현물													
	연구재료비(G)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H)		현금													
			현물													
	연구수당(I)															
	직접비 소계 (K=E1+F+G+H+I)															
간접비(L)																
연구개발비 총액(M=K+L)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연구지원인력인건비(C)는 비영리기관에만 해당됨

(2)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 연차별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상세한 단가, 수량 등은 생략하고 개괄적으로 작성하되, 참여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현황표 및 8-3. 연구개발비 세부 사용계획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작성이 필요함

(2-1)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관명

①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총괄표

(단위 : 원)

비목	항목			1단계			합계
				1차 연도	2차 연도	n차 연도	
직접비	인건비	내부인건비(A)	현금(N)				
			현물				
		외부인건비(B)	현금(O)				
		연구지원인력인건비(C)					
		소계(A+B+C)					
	학생인건비(D)		일반				
			통합관리				
	총 인건비[1](E1=A+B+C+D)						
	수정인건비[2](E2=A+B+D)						
	연구시설·장비비(F)		현금(P)				
			현물				
	(연구시설·장비비 중 통합관리비(현금))						
	연구재료비(G)		현금(Q)				
			현물				
	연구활동비(H)		현금(R)				
			현물				
	연구수당(I)						
	연구수당 비율3)(I/E2)						
	직접비 소계 (K=E1+F+G+H+I)						
간접비(L)							
간접비 비율4)(L/(N+O+C+D+P+Q+R+I))							
연구개발비 총액(M=K+L)							

1) 총 인건비 : 내부인건비 + 외부인건비 + 연구지원인력인건비 + 학생인건비
2) 수정인건비 : 내부인건비 + 외부인건비 + 학생인건비
3) 연구수당 비율 : (연구수당/수정인건비)*100
4) 간접비 비율 : (간접비/수정직접비)*100,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소계 - 직접비(현물)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 연구지원인력인건비 : 비영리법인의 해당 연구부서에 소속된 자 한하여 직접비에서 행정지원인력 인건비 계상을 허용함. 단, 행정 지원인력에 대한 연구수당은 계상 및 사용이 불가하며,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경우 간접비에 계상 불가
-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은 일반란에 학생인건비 작성하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은 통합관리에 학생인건비를 작성
- ○ 연구시설·장비비 중 통합관리비(현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비영리기관에 한해 계상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수정직접비의 5% 이내로 계상할 수 있음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인 경우에도 의무 계상은 아니며, 연구책임자가 적립 희망 시 계상합니다
- ○ 연구수당의 경우 수정인건비(E2)의 20%이내 범위에서 계상 가능함. 공고 시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 비율의 범위에서 산정
 - 수정인건비는 내부+외부+학생인건비의 합을 말하며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를 포함하지 아니함
 -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이 불가하며, 전체연구개발기간에 대한 협약 체결은 1회 실시하므로 최초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 유의하여 연구수당을 계상할 것
- ○ 간접비 비율은 (간접비 합계)/(수정직접비)의 비율로 작성하여야 하며, 영리기관(기업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을 포함])은 수정직접비의 10%이내, 비영리기관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하는 간접비 비율을 참고하여 계상하여야 함

참고자료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다. 연구시설·장비비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4)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
라. 연구재료비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
아. 연구활동비	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다)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라)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마)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바)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사)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아)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계상하려는 경우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되는 이용지원시스템(https://www.digitalmarket.kr)을 확인한 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선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함 차)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자. 연구수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② 참여연구자 인건비 현황표 **※ 연차별로 작성**

o x차 연도

(단위 : 천원)

인력 구분	성명(국적)	직위 (학생일 경우 학생 기재)	내·외부 및 지원 구분*	신규 (청년의무/ 추가/기타) 기존/ 시간선택/ 실습)	급여총액 (A)	참여기간 (B, 개월)	해당 차수 인건비 계상률 (%) (C)	합 계 ((A/12)×B×(C/100))		
								현금	현물	계
참여 연구자 (기존)	홍길동(한국)	소장	내부	시간선택						
			외부	-						
	소계(D)									
참여 연구자 (신규)	강감찬(한국)	교수	내부	신규						
		학생								
	소계(E)									
비영리 연구 지원 인력	강감찬(한국)	선임 행정원	지원	신규						
	소계(F)									
총액(G=D+E+F)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 인건비 계상률은 10%이상을 반드시 계상하여야함
- ○ 본 인건비 란에 기재되지 아니한 연구원의 연구개발비 사용은 불인정 회수됨
- ○ 중소·중견기업 신규 채용 연구원에 책정된 인건비 현금을 미달 사용할 경우 사안에 따라 비례적으로 인정된 기존 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일부 또는 전액이 불인정 회수됨
- ○ 내·외부 및 지원인력 구분 :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로 구분하여 내부인건비일 경우 '내부'로 표기하고 외부인건비의 경우 '외부'로 구분하고, 지원인력은 '지원'으로 표기
 - 내부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를 말하며 소속 여부는 4대보험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판단함
 - 외부의 자격 요건은 프리랜서, 타교학생(소속기관의 규정에 따라 학생연구자로 구분하는 경우는 기재하지 않고 외부인건비가 아닌 학생인건비로 계상), 실습연구원, 인건비가 미확보 된 비영리기관 소속 연구자를 말함
- ○ '급여총액'은 당해년도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합한 금액을 말함
 1. 참여연구자 +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 본인부담금포함)
 2. 참여연구자 +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

 * 급여총액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급여 총액(연구수당, 연구개발능률성과금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른 포상은 제외)으로써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
- ○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必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을 의무채용 한 경우 '청년의무', 의무채용 외에 추가로 청년을 채용하여 기관부담(현금)을 감면 받는 경우 '청년추가' 표기(공고문 및 공통운영요령 제25조, 26조, 27조 참고)
 - 채용예정이라도 국적을 필히 기재하고 청년 채용은 내국인에 한함
- ○ 시간선택제근무 : 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여성 참여연구자'는 시간으로 명기하고 현금인건비를 산정한 경우 관련 증빙(연구개발기관 확인 공문 등) 제출 필요
- ○ 비영리지원인력 : 비영리법인의 해당 연구부서에 소속된 자 한하여 직접비에서 행정지원인력 인건비 계상을 허용함. 단, 행정 지원인력에 대한 연구수당은 계상 및 사용이 불가하며,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경우 간접비에서 계상 불가

③ 학생인건비 현황표 **※ 학생인건비 비통합관리기관만 작성_연차별로 작성**

o x차 연도

소속기관	내·외부	과정명	학과/ 학부명	월 급여	참여 기간 (개월)	인건비계상률 (%)	합계 (단위 : 천원)
합 계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 참여 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 ○ 과정명은 '박사 과정', '석사 과정', '학사 과정'으로 기재
- ○ 학과/학부명은 재학 중인 학과 또는 학부 기재
- ○ 인건비계상률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산하여 넣어야 함
- ○ 학생 인건비 산정 기준
 - 박사 후 과정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학생인건비가 아닌 내부인건비로 계상하여야 함
 - 박사 과정: 2,500천 원 × 참여 기간 × 인건비계상률
 - 석사 과정: 1,800천 원 × 참여 기간 × 인건비계상률
 - 학사 과정: 1,000천 원 × 참여 기간 × 인건비계상률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23년 3월부터 학사 1,300천 원, 석사 2,200천 원, 박사 3,000천 원으로 계상
- ○ 인건비계상률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개발 과제 인건비계상률을 고려하여 월 100% 이내에서 산정함

④ 연구시설·장비 구축(임차)계획 ※ 필수작성

구축 연차	연구시설·장비명	구축방식*	사용용도 (규격)	구축(설치)일 또는 임차기간	설치장소	구축비용(천원)**
1	워크스테이션	구매		'21년6월	KICOX 부설연구소	30,000
	소계					
2						
	소계					
총계						

* 개발, 구매, 임대 등
**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 활용계획서 별도 제출

④-1 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계획 ※ 협약기간 내 운영·활용하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작성

연구개발 기관(구분)	연구시설명	기존/신규 구분	운영기간	비용(단위 : 천원)			전담인력 수	활용계획	설치장소
				연간운영 비용	과제반영 비용	현금/ 현물			
			yyyy~yyyy						

⑤ 연구재료(시약, 재료 등) 구입비 ※ 필수작성

구매 연차	연구재료	사용용도	구매(입고)일	사용처	단가(천원)*	구입량*(g)	구매비용 (천원)**
1	Fe계 금속파우더	3D프린팅 성능 분석을 위한 시험데이터 출력	'21년6월	KICOX 공장	30	1,000g	30,000
	소계						
2							
	소계						
총계							

* 연차별 동일항목(재료, 시약 등)의 구매비용이 **2천만원 미만**(부가세 포함)인 경우 단가 및 구입량은 작성 불요
** 연차별 동일항목(재료, 시약 등)의 구매비용이 **2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인 경우 시약·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별도 제출

⑥ 연구재료제작비(시험제품·설비 등) 사용계획 ※ 필수 작성

구매 연차	연구재료제작 항목	사용용도	제작기간	입고일	사용처	구매비용 (천원)
1	4m급 3D프린팅 출력 장비 하우징(케이지)		'21.6~12	'21년12월	KICOX 공장	25,000
	소계					
2						
	소계					
총계						

⑦ 연구활동비(외주 용역비) ※ 해당 시 필수 작성

연차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社	용역기간	결과물	소요비용 (천원)*
1						
	소계					
2						
	소계					
총계						

*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외주 용역을 활용하는 경우 외주 용역 활용계획서 별도 제출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기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⑧ 연구활동비(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실 운영비, 종합관리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그 밖의 비용)

※ 상기 내역 산정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필수

연차	명칭 (구분)	방식	사용용도 (업체)	사용(이행) 기간	설치장소 (결과물)	단가 (천원)	수량 (건)	소요비용 (천원)
1	Ansys (소프트웨어 활용비)	임대	구조 설계 및 해석	'21.4~12	산단공 부설연구소	30,000	1	30,000
	논문게재료 (그 밖의 비용)	출판/ 발표	연구개발 성과(ooo) 관련 논문 게재	'22.9~11		500	2	1,000
	소계							
2	특허전문가활용비 (지식재산창출활동비)	특허전문 기관활용	특허대응전략수립 (KISTA)	'22.1~12	- (특허전략 보고서)	15,000	1	15,000
	표준화 활동비 (지식재산창출활동비)	표준전문 기관활용	국제표준 기고발표를 위한 COSD기관 컨설팅 비용 (oooo협회)	'23.1~12	- (표준연계 전략보고서)	10,000	1	10,000
	소계							
합계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연구활동비	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외주용역비에 이미 기재된 내역은 기재 불필요) 다)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기재 불필요) 라)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기재 불필요) 마)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최소 사용단위(월/연 단위 등) 라이선스 계약을 원칙으로 해당 비용 계상** 바)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영리기관은 기재 후 반드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을 첨부할 것) 사)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기재 불필요) 아)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계상하려는 경우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고시하여 운영되는 이용지원시스템(https://www.digitalmarket.kr)을 확인한 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선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함 차)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⑨ 간접비 **※ 기업만 작성하며, 아래 세부항목에 대해서만 계상이 가능함**

연차 (단계)	연도	세부항목	세부내용	소요비용 (천원)
1차 (1단계)	202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전문가)	김oo(연구지원전문가)의 인건비(인건비계상률 50%)	10,000
			박oo(연구지원전문가)의 인건비(인건비계상률 50%)	
		연구지원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1,000
			연구 보안관리비	100
			연구 윤리활동비	100
		성과활용지원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2,000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연구지원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2024			
	소계			
2차 (1단계)				
	소계			
합계				

(2-2) 공동연구개발기관1 : 기관명

①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비목	항목			1단계 1차 연도	1단계 2차 연도	1단계 n차 연도	합계
직접비	인건비	내부인건비(A)	현금(N)				
			현물				
		외부인건비(B)	현금(O)				
		연구지원인력인건비(C)					
		소계(A+B+C)					
	학생인건비(D)		일반				
			통합관리				
	총 인건비1)(E1=A+B+C+D)						
	수정인건비2)(E2=A+B+D)						
	연구시설·장비비(F)		현금(P)				
			현물				
	(연구시설·장비비 중 통합관리비(현금))						
	연구재료비 (G)		현금(Q)				
			현물				
	연구활동비 (H)		현금(R)				
			현물				
	연구수당(I)						
	연구수당 비율3)(I/E2)						
	직접비 소계 (K=E1+F+G+H+I)						
간접비(L)							
간접비 비율4)(L/(N+O+C+D+P+Q+R+I))							
연구개발비 총액(M=K+L)							

1) 총 인건비 : 내부인건비 + 외부인건비 + 연구지원인력인건비 + 학생인건비
2) 수정인건비 : 내부인건비 + 외부인건비 + 학생인건비
3) 연구수당 비율 : (연구수당/수정인건비)*100
4) 간접비 비율 : (간접비/수정직접비)*100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소계 - 직접비(현물)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연구지원인력인건비 : 비영리법인의 해당 연구부서에 소속된 자 한하여 직접비에서 행정지원인력 인건비 계상을 허용함. 단, 행정 지원인력에 대한 연구수당은 계상 및 사용이 불가하며,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경우 간접비에서 계상 불가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에 해당하지 않는기관은 일반란에 학생인건비 작성하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은 통합관리에 학생인건비를 작성
- 연구시설·장비비 중 통합관리비(현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비영리기관에 한해 계상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수정직접비의 5% 이내로 계상할 수 있음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인 경우에도 의무 계상은 아니며, 연구책임자가 적립 희망 시 계상
- 연구수당의 경우 수정인건비(E2)의 20%이내 범위에서 계상 가능함. 공고 시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 비율의 범위에서 산정
 - 수정인건비는 내부+외부+학생인건비의 합을 말하며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를 포함하지 아니함
 -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이 불가하며, 전체연구개발기간에 대한 협약 체결은 1회 실시하므로 최초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 유의하여 연구수당을 계상할 것
- 간접비 비율은 (간접비 합계)/(수정직접비)의 비율로 작성하여야 하며, 영리기관(기업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을 포함])은 수정직접비의 10%이내, 비영리기관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하는 간접비 비율을 참고하여 계상하여야 함

참고자료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다. 연구시설·장비비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4)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
라. 연구재료비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
아. 연구활동비	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다)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라)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마)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바)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사)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아)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계상하려는 경우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되는 이용지원시스템(https://www.digitalmarket.kr)을 확인한 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선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함 차)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자. 연구수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② 참여연구자 인건비 현황표 ※ **연차별로 작성**

o x차 연도

(단위 : 천원)

인력 구분	성명(국적)	직위 (학생일 경우 학생 기재)	내·외부 및 지원 구분*	신규 (청년의무/ 추가/기타) 기존/ 시간선택/ 실습)	급여총액 (A)	참여기간 (B, 개월)	해당 차수 인건비 계상률 (%) (C)	합 계 ((A/12)×B×(C/100)) 현금	현물	계
참여 연구자 (기존)	홍길동(한국)	소장	내부	시간선택						
			외부	-						
	소계(D)									
참여 연구자 (신규)	강감찬(한국)	교수	내부	신규						
		학생								
	소계(E)									
비영리 연구 지원 인력	강감찬(한국)	선임 행정원	지원	신규						
	소계(F)									
총액(G=D+E+F)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 인건비 계상률은 10%이상을 반드시 계상하여야함
- ○ 본 인건비 란에 기재되지 아니한 연구원의 연구개발비 사용은 불인정 회수됨
- ○ 중소·중견기업 신규 채용 연구원에 책정된 인건비 현금을 미달 사용할 경우 사안에 따라 비례적으로 인정된 기존 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일부 또는 전액이 불인정 회수됨
- ○ 내·외부 및 지원인력 구분 :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로 구분하여 내부인건비일 경우 '내부'로 표기하고 외부인건비의 경우 '외부'로 구분하고, 지원인력은 지원으로 표기
 - 내부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를 말하며 소속 여부는 4대보험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판단함
 - 외부의 자격 요건은 프리랜서, 타교학생(소속기관의 규정에 따라 학생연구자로 구분하는 경우 외부 인건비가 아닌 학생인건비로 계상 가능), 실습연구원, 인건비가 미확보 된 비영리기관 소속 연구자를 말함
- ○ '급여총액'은 당해년도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합한 금액을 말함
 1. 참여연구자 +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 본인부담금포함)
 2. 참여연구자 +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
 * 급여총액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급여 총액(연구수당, 연구개발능률성과금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른 포상은 제외)으로써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
- ○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必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을 의무채용 한 경우 '청년의무', 의무채용 외에 추가로 청년을 채용하여 기관부담(현금)을 감면 받는 경우 '청년추가' 표기(공고문 및 공통운영요령 제25조, 26조, 27조 참고)
 - 채용예정이라도 국적을 필히 기재하고 청년 채용은 내국인에 한함
- ○ 시간선택제근무 : 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여성 참여연구자'는 시간으로 명기하고 현금인건비를 산정한 경우 관련 증빙(연구개발기관 확인 공문 등) 제출 필요
- ○ 비영리지원인력 : 비영리법인의 해당 연구부서에 소속된 자 한하여 직접비에서 행정지원인력 인건비 계상을 허용함. 단, 행정 지원인력에 대한 연구수당은 계상 및 사용이 불가하며,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경우 간접비에서 계상 불가

③ 학생인건비 현황표 ※ **학생인건비 비통합관리기관만 작성_연차별로 작성**

o x차 연도

소속기관	내·외부	과정명	학과/ 학부명	월 급여	참여 기간 (개월)	인건비계상률 (%)	합계 (단위 : 천원)
합 계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 참여 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 ○ 과정명은 '박사 과정', '석사 과정', '학사 과정'으로 기재
- ○ 학과/학부명은 재학 중인 학과 또는 학부 기재
- ○ 인건비계상률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산하여 넣어야 함
- ○ 학생 인건비 산정 기준
 - 박사 후 과정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학생인건비가 아닌 내부인건비로 계상하여야 함
 - 박사 과정: 2,500천 원 × 참여 기간 × 인건비계상률
 - 석사 과정: 1,800천 원 × 참여 기간 × 인건비계상률
 - 학사 과정: 1,000천 원 × 참여 기간 × 인건비계상률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23년 3월부터 학사 1,300천 원, 석사 2,200천 원, 박사 3,000천 원으로 계상
- ○ 인건비계상률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개발 과제 인건비계상률을 고려하여 월 100% 이내에서 산정함

④ 연구시설·장비 구축(임차)계획 ※ **필수작성**

구축 연차	연구시설·장비명	구축방식*	사용용도 (규격)	구축(설치)일 또는 임차기간	설치장소	구축비용(천원)**
1	워크스테이션	구매		'21년6월	KICOX 부설연구소	30,000
	소계					
2						
	소계					
총계						

* 개발, 구매, 임대 등

**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 활용계획서 별도 제출

④-1 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계획 ※ **협약기간 내 운영·활용하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작성**

연구개발 기관(구분)	연구시설명	기존/신규 구분	운영기간	비용(단위 : 천원)			전담인력 수	활용계획	설치장소
				연간운영 비용	과제반영 비용	현금/ 현물			
			yyyy-yyyy						

⑤ 연구재료(시약, 재료 등) 구입비 ※ **필수작성**

구매 연차	연구재료	사용용도	구매(입고)일	사용처	단가(천원)*	구입량*(g)	구매비용 (천원)**
1	Fe계 금속파우더	3D프린팅 성능 분석을 위한 시험데이터 출력	'21년6월	KICOX 공장	30	1,000g	30,000
	소계						
2							
	소계						
총계							

* 연차별 동일항목(재료, 시약 등)의 구매비용이 **2천만원 미만**(부가세 포함)인 경우 단가 및 구입량은 작성 불요

** 연차별 동일항목(재료, 시약 등)의 구매비용이 **2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인 경우 시약·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별도 제출

⑥ 연구재료제작비(시험제품·설비 등) 사용계획 ※ **필수 작성**

구매 연차	연구재료제작 항목	사용용도	제작기간	입고일	사용처	구매비용 (천원)
1	4m급 3D프린팅 출력 장비 하우징(케이지)		'21.6~12	'21년12월	KICOX 공장	25,000
	소계					
2						
	소계					
총계						

⑦ 연구활동비(외주 용역비) ※ **해당 시 필수 작성**

연차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社	용역기간	결과물	소요비용 (천원)*
1						
	소계					
2						
	소계					
총계						

*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외주 용역을 활용하는 경우 외주 용역 활용계획서 별도 제출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⑧ 연구활동비(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실 운영비, 종합관리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그 밖의 비용)

※ 상기 내역 산정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필수

연차	명칭 (구분)	방식	사용용도 (업체)	사용(이행) 기간	설치장소 (결과물)	단가 (천원)	수량 (건)	소요비용 (천원)
1	Ansys (소프트웨어 활용비)	임대	구조 설계 및 해석	'21.4~12	산단공 부설연구소	30,000	1	30,000
	논문게재료 (그 밖의 비용)	출판/ 발표	연구개발 성과(ooo) 관련 논문 게재	'22.9~11		500	2	1,000
	소계							
2	특허전문가활용비 (지식재산창출활동비)	특허전문 기관활용	특허대응전략수립 (KISTA)	'22.1~12	- (특허전략 보고서)	15,000	1	15,000
	표준화 활동비 (지식재산창출활동비)	표준전문 기관활용	국제표준 기고발표를 위한 COSD기관 컨설팅 비용 (oooo협회)	'23.1~12	- (표준연계 전략보고서)	10,000	1	10,000
	소계							
합계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연구활동비	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외주용역비에 이미 기재된 내역은 기재 불필요) 다)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기재 불필요) 라)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기재 불필요) 마)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최소 사용단위(월/연 단위 등) 라이선스 계약을 원칙으로 해당 비용 계상** 바)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영리기관은 기재 후 반드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을 첨부할 것) 사)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기재 불필요) 아)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계상하려는 경우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되는 이용지원시스템(https://www.digitalmarket.kr)을 확인한 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선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함 차)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⑨ 간접비 **※ 기업만 작성하며, 아래 세부항목에 대해서만 계상이 가능함**

연차 (단계)	연도	세부항목	세부내용	소요비용 (천원)
1차 (1단계)	202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전문가)	김oo(연구지원전문가)의 인건비(인건비계상률 50%)	10,000
			박oo(연구지원전문가)의 인건비(인건비계상률 50%)	
		연구지원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1,000
			연구 보안관리비	100
			연구 윤리활동비	100
		성과활용지원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2,000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연구지원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2024			
	소계			
2차 (1단계)				
	소계			
합계				

[참고]

정량적 목표항목의 성능지표

예시)

과제명 : Nd-Fe-B계 자석개발

평 가 항 목 주요성능 Spec[1]		단위	비중[2]	세계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업 (/)	연구개발전 국내 수준	개 발 목표치		평가방법[3]
				성능수준	성능수준	당해	최종	
자기적특성	잔류자속밀도	Br(T)	12	1.23	1.20	1.21	1.22	KS C 2501 JIS C 2501
	보자력(bHc)	kA/m	13	880	800	850	870	
	보자력(Hic)	kA/m	16	960	900	940	960	
	최대에너지적	kJ/㎥	9	290	230	240	280	
	Br의 온도계수	%/K	10	-0.126	-0.126	-0.123	-0.123	
	iHc온도계수	%/K	10	-0.6	-0.6	-0.6	-0.6	
물리적특성	밀 도	Mg/㎥	10	7.4	7.3	7.35	7.4	
	전기저항	Ω·m	12	1.4	1.2	1.3	1.39	
	비커스 경도	-	8	6000	5800	6000	6000	
	곡 강 도	MPa	5	250	230	240	245	
	인장강도	MPa	5	80	77	79	79	
			100					

주) 1) 주요성능의 수치적 Spec은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 시간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말함.

2) 비중은 각 구성성능Spec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3) 평가방법은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며(예 : KS…, JIS…)공적 인증기관에서 성적서 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평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기재함.

(분야별 성능지표) 예시

※ 아래의 예시는 분야별로 일반적인 지표만을 열거하였으며, 과제성격에 맞게 필요사항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기계분야〉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폐수유량	㎥/day	배 기	g/kw.hr	회전정밀도	㎛
BOD	㎎/ℓ	오일압력	Kg/㎠	진 원 도	㎛
탁 도		파종속도	m/hr	표면거칠기	Rmax
폐수배출량	㎥/day	분 해 능	m	주축속도	rpm
COD	㎎/ℓ	측정범위	mm	절삭속도	m/min
생산속도	m/min	측정속도	m/sec	절삭길이	mm
포장속도	PCS/min	stroke	m/m	이 송 량	mm/rev
공급속도	PCS/min	정 밀 도	m/m	토 오 크	N.m
신 장 률	%	공 압	Kg/㎝	동 심 도	㎛
누 설 량	㎤/min	작동전압	V	흔 들 림	㎛
최고사용압력	Kg/㎠	소비전류	mA	가공시간	min/EA
응답시간	sec	작동속도	m/sec	급이송속도	m/min
유 속	m/s	작동온도	도	크 기	mm
소 음	dB	회 전 각	도	허용하중	㎏
조향각도	도	토 크	kgf.m	최소설정이송량	mm
작 동 력	kgf	정격유량	l/min	위치결정정도	mm
회전속도	rpm	최고사요압력	kgf/㎠	반복정도	mm
출 력	ps/rpm	중 량	kgf	분 할 각	도°
연료 소비율	g/ps.hr	직 각 도	㎛	공구보유수	EA
평 행 도	㎛	이송오차	㎛		

〈금속분야〉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인장감도	MPa	용 착 량	Ohnin	용접속도	m/㎜
항복강도	MPa	고온강도	kgf/㎟	입 자	㎛
경 도	Hv	피로강도	MPa	순 도	%
연 신 율	%	정 밀 도	㎜	내구성	
밀 도	g/㎤	통 기 도		Sppatter발생량	g/min
생산성향상	개/cycle	표면조도		Fume발생량	g/min
주입속도	㎜/sec	내 열 성	℃	용착효율	%
열전도도	W/m.k	내마모성	g/㎟	Slag 박리성	sec/m
전기전도도	m/Ω·㎟	내충격성	kg/㎟	불순물 함량	%
회 수 율	%	저온강도	kg/㎟	압출비	
송 급 성	m/Min	성능평가		압출속도	m/min
열팽창계수	10-6/k	가스발생량		탄성률	GPa
내식성	g/㎟				

〈섬유분야〉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방사속도	m/min	데니어	denier	흡수율	%
방사량	ton/day(㎏/horu)	강도	g/d	사속(초속)	m/min
인장강도	kgf/㎟	밀도	g/㎤	견뢰도	급
연실율	%	LOI		꼬임수	Tn
신 도	%	여과효율	%	통기도	CC/㎟
압력손실	%	YPM			

〈화공분야〉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순 도	%	반응도	%	P H	
수 율	%	회수율	%	비 중	
중합도(DP)		점화율	%	밀 도	g/㎤
아민가	%	분자량	g/mol	점 도	cps
애 가	%	고형분압량	wt%	유리전이온도	℃
역 가		저장안정성	rodnif		

〈전자분야〉

Spec 명	평가기준 및 단위
Frequency Range	2 GHZ
Output Power	≥ 0 dBm
Supply Voltage	3.0 Volts
C/N Ratio	≥ 105 dBc
S/N Ratio	≥ 50 dB
Spurious Level	20 dBc Max
Package	SMD TYPE
Substrate	Ceramic
Size	0.13cc
Operation Temperature	-30~+80℃
Output Impedance	50Ω
Tuning Voltage	0.5~2.3V
Current Consumption	6㎃ 이하
Puling Figure	300kHz 이하
Pushing Figure	300kHz 이하
Temperature Stability	≤ 2 MHz

[서식 제45호 붙임1](연구개발기관용)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지원대상분야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위의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연구개발기관 간 상호 신뢰를 통한 공동 기술개발 수행에 동의하며, 본 연구개발과제가 선정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기술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또한, 기술료 납부의무기관의 경우 개발완료 후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술료의 납부 규정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나머지 각 공동연구개발기관을 대표하여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도록 위임하고 그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에게 수여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대표자)** **(연구책임자)**

_____ _____(인) _____(인)

(공동연구개발기관명) **(대표자)** **(책임자)**

_____ _____(인) _____(인)

(공동연구개발기관명) **(대표자)** **(책임자)**

_____ _____(인) _____(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 법인기관인 경우는 (법인)인감,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개인인감, 대학 및 연구소의 경우는 직인을 각각 날인
※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도 서명 날인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 모두가 제출해야하며, 연구개발기관 별 낱장 제출도 가능함

[서식 제45호 붙임2](연구개발기관용)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지원대상분야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사전검토 내용	해당有	해당無
☐ **신청과제의 내용이 해당사업의 목표와 부합성 여부**	()	()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 지원 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 되는가?	()	()
☐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여부** ▸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으로 인하여 중복투자, 기술개발의 필요성 또는 사업화에 우려가 있는가?	()	()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가?	()	()
☐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가?	()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경우 부도상태인가?	()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는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함)	()	()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개 회계연도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가? (단,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
▸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	()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가?	()	()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 제도 초과, 최소 인건비계상률 여부 등		
▸ 연구책임자로 과제수행은 최대 3개, 참여연구자로 최대 5개를 초과하였는가?	()	()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 하였는가?	()	()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신청과제의 인건비계상률이 10% 이상인가?	()	()
▸ 최근 3개년도 계속 이자보상비율이 1미만에 해당하는가? (해당될 경우에 한계기업으로 분류됨)	()	()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의 경우 산업부 소관 사업의 동시수행 과제수가 사전지원제외 사항에 해당 하는가? 주관연구개발기관유형(한계기업) / 한계기업 중견기업 / 4 중소기업 /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	()
□ 신청자격 적합성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타 공고상의 신청자격을 보유하고 있는가?	()	()

사후관리 검토항목	해당有	해당無
□ 최근 회계연도말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이 300% 이상**		
□ 최근 회계연도말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이 100% 이하**		
□ 부분자본잠식(자본총계+잉여금〈납입자본금〉)		
□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0배 미만**		
□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 최근 회계년도말 외부감사 의견 "한정"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 **모든 신청기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

※ 해당 또는 비해당에 V표

[서식 제45호 붙임3](연구개발기관용)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연구자용)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중요시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 제2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제7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하시는 경우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수집 항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①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제외(제척, 기피)대상 확인,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참여연구자 등) 여부의 확인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참여 수 제한 초과여부, 기타 선정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과제 협약 및 협약변경, 보고서 제출, 단계·최종·특별평가, 성과조사 및 평가 관리
다.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 연구개발비 지급 및 연구개발비 사용의 적법·적정성관리
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사. 만족도 조사, 사업 및 경영활동 안내 등 사후관리
아. 연구개발정보의 검증

②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항목

이름(영문이름), 성별, 과학기술인 등록번호(연구자등록번호), (자택, 직장) 주소, (사무실, 휴대폰)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인건비계상률,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인적사항, 전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지급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③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보유·이용기간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보유

☞ **위에 대한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미동의 시 해당 사업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①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제외(제척, 기피)대상 확인,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참여연구자 등) 여부의 확인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참여 수 제한 초과여부, 기타 선정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과제 협약 및 협약변경, 보고서 제출, 단계·최종·특별평가, 성과조사 및 평가 관리
- 다.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 연구개발비 지급 및 연구개발비 사용의 적법·적정성관리
- 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 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 사. 만족도 조사, 사업 및 경영활동 안내 등 사후관리

② 수집·이용하려는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③ 고유식별정보 보유·이용기간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

☞ **위에 대한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미동의 시 해당 사업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확인 및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 나.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시 과제수행현황(참여연구자)을 포함한 요구자료 제공
- 다. 연구개발 사업 관련 타 전문기관의 동일업무 수행
- 라.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제외(제척, 기피)대상 확인,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참여 수 제한 초과여부, 기타 선정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 마.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 바.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 연구개발비 지급 및 연구개발비 사용의 적법·적정성관리
- 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 아.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 자.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등 중앙행정기관, 국회, 감사원 등 정부기관,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 연구개발비 관리 및 취급은행, 국가 R&D 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조사, 기술료 징수 등의 전문기관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 해외기관이 포함된 과제의 경우, 보안관리요령 제10조에 따라 보안등급 판정을 위해 전략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 목적으로 전략물자관리원에 제1항의 정보를 제공

③ 고유식별정보 보유·이용기간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제3자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 **위에 대한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미동의 시 해당 사업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청렴서약

본인(또는 본 연구개발기관)은 산업통상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출연지원 사업의 연구과제에 선정되어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1. 본 연구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공정한 연구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청탁, 알선,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 및 제공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비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고 윤리경영에 앞장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R&D를 수행하겠습니다.

☞ **위에 대한 청렴서약을 확약하시겠습니까? 확약함 □ 확약하지 않음 □**
(미확약 시 해당 사업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본 동의서 작성자 정보 및 동의란

소속기관	성명	직위	주민등록번호[1]	국가연구자번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인건비 계상률[2]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3책/5공)[3]	본 동의서 동의날짜 (YYYY.MM.DD)	본 동의서에 대한 동의 (자필서명)
○○○					100%	2/5	2022.01.01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등 과제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를 기재하여야 함

※ 전체 인건비계상률에는 본 과제를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별 인건비 인건비계상률을 기재하여야 함

※ 참여연구자 1명 당 1장의 확인서를 날인하거나, 참여연구자 모두가 1장의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 중 선택 가능하며, 연구개발기관별로 제출 가능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는 2부 작성(1부는 과제 신청 시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보관하고 있다가 선정되어 협약할 경우 제출)

※ 본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도 제출하여야 함

※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로 대체 가능하며 외국인등록번호 미부여자는 주민번호 기입 생략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시 다른 개인정보 항목과 분리하여 구분 동의가 필요하며, 이에 모든 과제 참여자는 본 서식내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 란에 각각 서명하여야 함

[서식 제45호 붙임4](연구개발기관용)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수집·조회·활용 동의 및 청렴서약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동의

①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목적
- ㅇ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②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 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중소기업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ㅇ 중소벤처기업부

④ 동의 효력기간
- ㅇ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미동의 시 해당 사업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청렴서약

본인(또는 본 연구개발기관)은 산업통상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출연지원 사업의 연구과제에 선정되어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1. 본 연구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공정한 연구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청탁, 알선,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 및 제공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비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고 윤리경영에 앞장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R&D를 수행하겠습니다.

☞ **위에 대한 청렴서약을 확약하시겠습니까? 확약함 □ 확약하지 않음 □**
(미확약 시 해당 사업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연구개발기관 동의란

연구개발기관명	법인번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	동의/서약 일자 (YYYY.MM.DD)	법인 날인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서명)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 과제 참여하는 모든 연구개발기관의 확인서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한 장에 모든 연구개발기관 날인이 불가능할 경우, 연구개발기관별로 동의서 각각 제출 가능)

[서식 제45호 붙임5](연구개발기관용)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기업 개요	기업명		대표자명	
	기업규모	대() 중견() 중소()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업종	
	채용담당	(성명·직위) (부서) (연락처)		
채용 계획	근무지			
	총 채용인원	명		
	채용분야	연구직	생산(관리)직	
	채용인원	정규직 ○명, 계약직 ○명	정규직 ○명, 계약직 ○명	
	채용시기	*’ . 월(명), ’ . 월(명)*	*’ . 월(명), ’ . 월(명)*	
	자격요건	1. 학력(관련 전공분야 등) – 2. 경력요건 – 3. 요구 자격증 – 4. 기타 요구되는 능력 –	1. 학력(관련 전공분야 등) – 2. 경력요건 – 3. 요구 자격증 – 4. 기타 요구되는 능력 –	
	급여액	00백만원		
역할분담	직무내용			

20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명 : 대표자 :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제45호 붙임7](연구개발기관용)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 활용계획서

* 3,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 건별로 작성

연구개발기관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공동연구개발기관명	(단계)구입연차	(x단계)x차년도(2021년)	
연구시설·장비명		(국문) 고성능 패킷 캡쳐 리플레이 시스템			
		(영문) High Performance Packet Capture & Replay System			
연구장비분류		대분류		중분류	
모델명		IS4010E			
제작국가		한국	제작사	시스메이트	
구입방법		구매(○) 임차()	구입구분	내자(○) 외자()	
구입(임차)일자(예정)		20XX. 5	구입(임차)금액(예정)	50,000,000원	
공동활용 여부		단독활용(○) 기관내부와 공동활용가능() 기관외부와 공동활용가능() 협의후 결정()			
연구시설·장비 개요	구입(임차) 필요성 및 규모 적합성	현재 구매하고자 하는 고성능 패킷 수집기와 유사한 사양의 네트워크 기반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과제에서 시험하거나 얻어진 결과물을 성능적 측면과 정확도 측면에서 정확히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는 Wired Speed로 패킷을 수집하고 리플레이해줄 시스템이 필요하다.			
	원리 및 특징	10 Gbps (9.95 Gbps) 성능으로 패킷을 캡쳐하고 분석할 수 있는 하드웨어 기반 시스템 추가적으로 패킷 샘플링, 패킷 전송, GPS 타임스탬프 기능 지원			
	주요사양	10 Gbps POS Monitoring Interface (extensible OC-192c fiber, PPP/HDLC layer 2) PCI-Express 8x Bus Interface (PCI-Express 8x bus speed, Higher packet DMA) Hardware-based Packet Capturing Engine			
	사용용도 (활용방안)	실제와 유사한 네트워크 테스트베드에서 Real Time으로 Wired Speed상에서 패킷을 생성해 내고 명확한 문자로 표현되는지의 검증과 지속적인 테스트를 통하여 패킷 검증 효과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어, 실제 네트워크에 거의 유사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본 연구의 검증 작업이 가능하게 되는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			
활용계획	수요예측 및 활용빈도	년평균 가동율 60% [(24시간X50주) / (40시간X50주)] 이상			
	운영비 확보 방안	해당 사항 없음			
	전담인력 확보 방안	해당 사항 없음			
	유지보수 방안	판매 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하고, 판매 업체의 전담 인력 활용으로 과제를 수행하면서 요구되는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동일기관내 동일/유사 장비 보유현황		동일/유사장비명	관리부서	취득일시	공동활용 가능여부
		PLS-1000	지식정보보안연구부	2006	활용불가(), 제한적 활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보호연구단에서는 현재 구매하고자 하는 패킷 수집 시스템과 유사한 사양의 네트워크 기반 수집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본 과제에서 요구되는 고성능에는 부족한 사양임			
(구매 시)공동활용 또는 임차사용 불가사유		고성능 패킷 수집 장비는 패킷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의 기본 기능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수집된 패킷을 분석하는 패킷 분석 엔진기술 개발과 알고리즘 검증 및 타당성 시험을 위하여 다양한 네트워크 트래픽을 대량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을 개발 제품에 접속시켜 지속적으로 시험하여야 하여야 함으로 다른 과제와 공동 활용이 어렵다. 또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은 본 과제에서 개발 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개발 기간 동안 계속 개발 및 시험환경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므로 구매가 임차보다 경제적이다.			

※ 부가세 포함 '3천만원이상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의 구입 또는 임차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모듈화된 연구시설 및 장비는 사용모듈 전체 구입가 기준임)

※ 견적서 첨부 필수

※ 장비분류는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별표 1] 산업기술개발장비 분류체계 참조

[서식 제45호 붙임8](연구개발기관용)

시약·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 연차별 동일항목(재료, 시약 등)의 구매비용이 2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인 경우 건별로 작성

연구개발기관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공동연구개발기관명		(단계)구입연차	(x단계)x차년도(2021년)	
재료명		(국문)				
		(영문)				
제작국가				판매사		
구입금액(예정)		원	구입단가(예정)	원	구입수량	개
재료 개요	구입 필요성 및 규모 적합성					
	원리 및 특징					
	주요사양					
	사용용도					
기타	특이사항					

※ 사업 신청 당시 단일 물품으로서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의 합계 금액이 2,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르는 시료 또는 재료를 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서식 제45호 붙임9](연구개발기관용)

외주 용역 활용계획서

용역명	(국문)			
	(영문)			
연구개발기관명	용역을 의뢰하는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명		업체명 (국가)	
용역금액(예정)	(원)/($)		용역기간	YYYY.MM.DD ~ YYYY.MM.DD
용역 필요성				
용역 목표				
주요내용(사양)				
사용용도				
용역기관 선정사유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외주 용역에 대해서 건별로 작성(단, 해외기관에 외주용역을 의뢰 할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필수 작성)

[서식 제45호 붙임10](연구개발기관용)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1. 연구개발과제 현황

세부사업명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내역사업명	R&BD네트워크구축·운영	
지원대상분야			연구개발 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명			구분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소속		성명		
연구개발기간	단계	전체	20 . . . ~ 20 . . . (년 월)		
	1	1차 연도	20 . . . ~ 20 . . . (년 월)		
		2차 연도	20 . . . ~ 20 . . . (년 월)		

2.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금액)

(단위 : 천원)

구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소프트웨어 비용(A)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사무용품 비용(B)	합계 (C=A+B)
단계	전체기간	(사용불가)			
1	1차 연도	(사용불가)			
	2차 연도	(사용불가)			

* 협약 체결 시 8-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2)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에서 계획한 연구실운영비를 기재하며,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이후 수정이 필요 할 경우 거점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협약변경 후 수정(※ 사무용품비용은 사전승인 없이 통보성 변경 가능)
** A에는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을 입력
*** B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사무용품 비용을 입력
**** 연구개발과제의 개발기간에 따라 행을 추가·삭제할 수 있음

3.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품목)

(단위: 개, 천원)

구분		분류	수량(G)	단가(H)	금액 (I=G×H)
1단계	1차 연도				
1.	품목명				
2.	품목명				
소 계					
1단계	2차 연도				
1.	품목명				
2.	품목명				
소 계					

* 협약 체결 시 8-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2)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에서 계획한 연구실운영비를 기재하며,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이후 수정이 필요 할 경우 거점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협약변경 후 수정(※ 사무용품비용은 사전승인 없이 통보성 변경 가능)
** '품목명'에는 기기·소프트웨어·비품의 품목명을 입력
*** '분류'란에는 사무용기기 및 소프트웨어 비용을 사용(계획) 시에는 '사무용'을,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비용을 사용(계획) 시에는 '환경유지'를 사무용품 비용을 사용(계획)시에는 '사무용품'으로 입력
**** 연구개발과제의 단계 구성에 따라 행을 추가·삭제할 수 있음
***** 제3호에 입력한 내용은 제2호에 입력한 내용과 부합해야 함
****** 영리기관은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에 이 서류를 거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제외)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인)
연구개발기관장: (직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제45호 붙임11](주관연구개발기관용)

연구 중복성 등에 관한 소명서

지원대상분야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 중복성 소명

구 분	유사 과제 (과제명)	신청과제 (과제명)
연구목표		
연구내용		
연구방법		
기타		

☐ 유사 과제와의 차별성

유사 과제와의 차별성

20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명 : 대표자 :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